

## 4.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1998-84호 1998. 6. 12

### 주요내용

- 가.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부동산 매입 수요부족으로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을 지원함.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구입할 경우 당해 주택 취득 후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형성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주택건설업계를 지원함.
- 다. 기업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동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기업구조 조종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등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당초 차입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은 동 차액을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주택회보